

인천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가단207256(본소), 2019가단235930(반소) 판결

[제3자이의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일, 이성호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진, 황성규

변론 종결2021. 1. 13.

판결 선고2021. 1.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18. 10.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4,100,8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차6167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9. 1.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19카정100052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3.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2018. 1.~2018. 5. 발생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8차6167호)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12. 'C은 피고에게 33,758,4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492,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8. 12. 15. C에 송달되어 2019. 1.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인천지방법원 D)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9. 1. 15. 피고 위임에 따라 C 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당초 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위 동산의 규격이 'UM960'으로 잘못 기재되었으나, 을 제8호증의 기재와 같이 'VM960'으로 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주장

원고는 C에게서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2018.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을 매매대금 269,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 지급일 및 물건 인도일 2018. 10. 8.로 정하여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② C은 2018. 10.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물건을 다시 임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관계약 및 기계사용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에 이 사건 각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였다.

■ 보관계약

C은 원고의 기계를 보관 중이며 반환 요청 시에는 즉시 출고하고, C은 원고에게 보관료 기타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보관장소: C 사업장 소재지

■ 기계사용계약

C은 2018. 11. 7.부터 이 사건 각 물건 사용 목적으로 매월 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위 물건의 하자 발생 시 C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기계 보관 및 사용 장소: C 사업장 소재지

③ 원고는 C에 이 사건 각 물건의 매매대금으로 2018. 10. 8. 50,000,000원, 2018. 10. 15. 120,000,000원, 2018. 10. 17. 126,56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 10. 8.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강제집행은 그 집행 대상인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후인 2019. 1. 15.에야 행하여졌으므로, 채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이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원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E의 일부 증언,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9~12호증, 을 제1~5, 8,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C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C은 이 사건 각 물건의 시세가 380,000,000원 정도인데도, 원고에게 이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269,600,000원(약 70%)에 이 사건 각 물건을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서 이 사건 각 물건을 매수하였음에도 C에 이를 그대로 두고 사용하게 하였는데,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계약상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도 C에 사용료의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다.

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사업장에 이 사건 각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강제집행을 당하였다. 당시 집행관이 C의 직원 F에게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 여부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하였는데도,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매도되었다는 등 그 소유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10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18. 10. 8. 주식회사 G에 대한 62,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도 H(대표자 1)에 양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에 이 사건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마) C은 2018. 10. 8.~2018. 10. 17. 원고에게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전부를 H에 송금하였다. H은 C이 작성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C이 H에서 받은 돈으로

직원 급여, 전기요금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강제집행 직후 주식회사 J(대표이사 I, 이하 'J')이 C의 사업장에 자신의 간판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각 물건은 그 사업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C의 직원이었던 K, L, M은 2018. 10.경 C을 퇴사하고 모두 J에 입사하였다[피고가 2020. 7. 3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J의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묻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위 직원들은 J에서 퇴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은 I이 대표자로 있는 H 또는 J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물건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렇지 않다면 C이 이 사건 각 물건을 보관 중에 J에 양도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바) 나아가 원고는, E이 N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세금 체납으로 설비 및 동산 등이 압류되어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인 ○ 이름으로 원고를 설립하고 금형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C에게서 이 사건 각 물건을 매수하였고,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C에 이 사건 각 물건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N 주식회사가 영위하던 금형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수 설비인 이 사건 각 물건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물건을 C에 보관시켜 실제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2018년 648,695,228원의 수입을 얻었고 2019년 1기 매출액도 199,506,366원에 이른다. 원고 스스로도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물건이 원고의 필수 설비인지 의문이 든다.

②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E은 2016. 5.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57)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E은 2018. 2. 7.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변론이 재개되어 2018. 8. 31.로 다시 선고기일 지정되고, 다시 변론이 재개되었다가 2018. 11. 2.로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무죄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면 이 사건 각 물건을 이용해 원고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속 기소되었던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막연한 기대로 매매대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후 E은 2018. 11. 21. 법정 구속되어 2018. 12. 19.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3일 만에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8. 20.자 준비서면에서 "매수자금을 확보할 수 없자 이 사건 각 물건을 향후 이용할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 다시 매도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 설치 장소 확보를 위해 사업장의 다른 설비들에 대한 재배치 문제, 설비 이용 인력 확보, 운송 비용, E에 대한 형사공판 결과 및 구속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C에 매수대금을 1~2주내에 지급할 테니 당분간은 이 사건 각 물건을 C에 임대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매수자금을 마련하지도 않고, 이 사건 각 물건의 설치 장소 및 이용 인력, 운송 방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④ 또한 E은 이 사건 각 물건의 임대 경위에 관하여 "당시 본인이 재판중이다 보니 혹시라도 재판이 잘못될 경우에 기계를 사용 못할 시 대비해 수입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잘못되지 않을 경우 바로 임대한 것을 취소하고 원고가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 C도 일 하던 걸 마무리 작업을 다 하지 못해서 한 2~3개월이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기계를 구입하는데 계약금을 먼저 주고 한 2~3회에 걸쳐서 돈을 주면 안 되냐고 서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수개월 작업 기간이 필요한 금형사업을 운영하는 원고와 C이 E의 구속 여부 등 유동적인 상태를 용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E의 구속 상태 및 소송비용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어 C을 상대로 임대료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는데,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원고가 E이 구속되지 않으리라고 막연히 기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공정증서만 작성한 채 C에 이 사건 각 물건을 보관시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고의 사해행위 취소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C에

대하여 물품대금 33,758,48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8차6167호) 정본의 송달 다음 날인 2018.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492,000원 독촉절차비용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2020. 6. 29. 위 채권 중 29,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독촉절차비용 492,000원, 위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7,796,823원[$= 33,758,487\text{원} \times 562\text{일}(2018. 12. 16. \sim 2020. 6. 29.) \div 365\text{일} \times 15\%$,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원금 20,711,177원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피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원금 13,047,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위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은 원고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2) C의 무자력 여부 을 제3, 9~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한 이 사건 각 물건의 가액이 380,000,000원인 사실, C 명의의 계좌잔액 합계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5,247,172원인 사실, C이 기업은행에 45,161,887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한 사실, 피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합계 1,097,717,31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1	기업은행(P)	1,460
2	기업은행(Q)	77(0.07USD)
3	기업은행(Q)	799,769(81,999JPY)
4	기업은행(R)	11,288
5	기업은행(S)	3(0.02CNY)
6	기업은행(T)	30,000,000
7	기업은행(U)	0
8	기업은행(V)	250,000
9	W은행	14,184,575
합계	45,247,172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참조).

부동산 등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매각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행위 또한 그것이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수익자와 통모하여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64. 4. 14. 선고 63다827 판결 참조), 나아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이 사건 각 물건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더욱이 C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원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원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인 피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C의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항변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일부 증언,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사해행위 취소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라면 그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1. 1. 13.) 당시까지 발생한 피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4,108,967원[= 13,047,310원 + 13,047,310원 × 198일(2020. 6. 30.~2021. 1. 13.) ÷ 365일 × 15%]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가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기계1)에 관하여 체결된 부분은 위 14,108,967원 중 피고가 구하는 14,100,893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 의무의 인정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4,100,893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봉지수

별지

1) 원고 대리인은 제10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매매목적물 중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부분을 일부취소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